



통보

다음 고지는 10.6 항을 근거로 회람한다.

1.	통보국가: <u>태국</u> 해당할 경우, 관련된 지방 정부의 이름(3.2 및 7.2):
2.	담당기관(Agency responsible): 소비자보호위원회(OCPB)
3.	조항 2.9.2 [X], 2.10.1 [], 5.6.2 [], 5.7.1 [], 3.2 [], 7.2 [], 기타에 근거해 통보:
4.	해당제품(HS 또는 국정세율 품목. 해당할 경우, ICS 회원국은 추가로 제공될 수 있다): 태양광 패널과 함께 사용하는 인버터
5.	제목(페이지수, 언어, 열람 방법): 표시위원회 고시 초안 - 태양광 패널용 인버터 표시관리대상제품 지정 관련(3 페이지, 태국어) 통보 문서 열람 링크 및/또는 요청 시 사본 제공이 가능한 기관 또는 당국의 연락처 정보: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6/TBT/THA/26_04390_00_x.pdf WTO/TBT 질의처 및 통보 기관 태국산업표준원(TISI), 산업부 전화: (662)430 6831 내선 2130 팩스: (662)354 3041 이메일: thaitbt@tisi.mail.go.th 웹사이트: https://www.tisi.go.th
6.	내용: 이 통보 초안은 태양광 패널용 인버터를 표시관리대상제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시관리대상제품의 표시에는 제품의 본질에 대한 오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적절한 문자, 그림, 인위적 디자인 또는 이미지를 명시하여야 하며, 태국어 또는 태국어를 병기한 외국어로 명확하게 보이고 읽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해당 표시관리대상제품의 표시는 수출용으로 제조되어 태국 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표시관리대상제품의 표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7.	적용할 경우, 시급한 문제의 성격을 포함하는 목표와 근거: 소비자 정보, 표시; 기만적 관행 예방 및 소비자보호; 인체 건강 또는 안전 보호
8.	관련 문서: 소비자보호법 제 B.E. 2522 호(1979) 및 개정안
9.	채택 예정일: 추후결정 시행 예정일: 관보 게재일로부터 60 일 후.

10. 의견 제출:

의견 마감일: 2026-09-08 (통보일로부터 15 일)

[] 통보일로부터 60 일

통보 관련 의견 처리를 위해 지정된 기관 또는 당국의 연락처 정보:

WTO/TBT 질의처 및 통보 기관

태국산업표준원(TISI), 산업부

전화: (662)430 6831 내선 2130

팩스: (662)354 3041

이메일: thaitbt@tisi.mail.go.th

웹사이트: <https://www.tisi.go.th>